

2025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 학적변동 신청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신청 화면

- 1 위 메뉴 접속 후 [추가] 버튼 클릭
- 2 학적변동 상세정보에서 신청하려는 학적변동 선택
- 3 [신청] 버튼 클릭하여 제출
- 4 학적변동신청목록에서 신청한 내역이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

1. 학적 반영(신청 승인)

가. 학적변동 신청 후 즉시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내용 심사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나. 증빙서류 미비 등에 따라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이후에는 반드시 승인 여부 확인

- 현재 학적 확인: EDWARD시스템 > 학적기본관리 > 학적상태 확인

2. 학적반영 후 취소 신청

○ EDWARD시스템에서 취소가 불가하므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교직원으로 방문 제출

3. 신청 관련 상세 안내

가. 안내: 계명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 홈페이지
나. 각종 서식: 학사홈페이지 > 학사자료실(서식자료실)

● 복학 신청

2025학년도 1학기 개강 전, 방학 기간 동안 복학 신청 접수

구분	1차 복학 신청	2차 복학 신청	3차 복학 신청	1학기 개강
신청기간	1. 2.(목) ~ 22.(수)	2. 4.(화) ~ 9.(일)	2. 17.(월) ~ 28. (금)	3. 4.(화)
등록기간	2. 19.(수) ~ 24.(월)	3. 4.(화) ~ 7.(금)	3. 12.(수) ~ 14.(금)	

※ 신청한 차수에 따라 등록금 납부 기간이 상이하므로 위의 등록 기간을 반드시 확인 바람
(2~3차 복학 신청자의 경우 정규 등록기간이 아닌 3월 중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

1. 복학생 수강신청



○ 휴학 상태에서도 수강구러미와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복학 예정자라면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2. 복학 후 등록금 납부

가. 복학 신청 차수에 따라 등록금 납부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위의 등록기간 확인

나. 등록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대체 비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 대치여부와 등록금 고지서 확인

다. 대치여부 확인: EDWARD시스템 > 학적기본관리 > 학적변동 > "등록구분" 확인

- 대치등록: 복학 학기에 등록금 납부 절차 필요 없음(고지서 발급X, 자동 수납됨)
- 반액등록: 복학 학기에 등록금의 반액 납부 필요
- 정규등록: 복학 학기에 등록금의 전액 납부 필요

주의 사항

가. 미복학 제적 유의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복학기간을 엄수하여야 함
- 복학하지 않고 휴학 유지 희망자는 복학예정학기에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복학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제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연장 신청' 바람)
- 복학예정학기 확인: EDWARD시스템 > 학적기본관리 > 학적변동 > 복학예정학기

나. 복학 신청 후 해당 학기의 등록금 납부를 마쳐야 인정학기(학년)가 올라감

● 복학 신청

휴학별로 복학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확인

복학 종류	제대복학	질병복학	그 외 복학 (가사휴학 등)
증빙 서류	다음 서류 중 택1하여 첨부 1.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전역증 4. 전역 예정 증명서 (전역하지 않은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 (*표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1. 복학 신청서 2. 건강 진단서 (질병 완치 확인 가능한 내용)	제출 서류 없음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첨부파일 필수 등록)	교무·교직원 방문 신청 (행소관 202호)	EDWARD 시스템 (첨부파일 불요)

1. 제대 복학

- 가. 본인의 복학예정학기 이내라면 전역 이후 복학 신청 가능
- 나. 가사휴학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제대 복학 승인 후에 가사휴학을 추가로 신청하여야 함
- 다. 개강일 이후 전역하는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무교직원으로 문의 바람

2. 제대 복학 신청 시 증빙 서류 ~~★~~~~★~~

- 가. 증빙 서류를 잘못 업로드한 경우, 복학 신청이 반려되므로 보완하여 재신청이 필요함
- 나. 복학 신청 시 작성하는 인적사항, 입영일자, 전역일자는 증빙 서류 상의 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 다. 증빙서류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메일 캡처 등은 승인 불가
- 라. 카드형 전역증은 앞뒷면 모두 업로드 (앞면만 올리는 등 일부만 업로드한 경우 승인 불가)

주의 사항

- 가. 증빙서류 심사를 위해 복학 승인까지는 최대 1~2주가량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나. 복학 신청 이후에는 [학적기본관리] 메뉴에서 본인의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바뀌었는지 확인

● 휴학 신청

2025. 1. 8.(수) ~ 기말고사 시작 전일까지 접수

미등록 휴학	등록 휴학
2025. 1. 8. (수) 이후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 신청	2025. 2. 19.(수) 이후 등록금 납부 상태에서 신청

※ 2025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 및 휴학별 신청 마감일은 추후 학사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 예정

1. '등록 휴학 & 미등록 휴학' 이란?

가. 미등록 휴학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 신청**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으로, 복학 시 등록금 납부 필요
-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휴학신청자는 모두 미등록 휴학처리 됨

나. 등록 휴학 **등록금 납부 후 신청 가능**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것으로,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복학 학기로 대체되는 등록금이 상이함(등록 휴학 마감일자 및 대체 금액은 추후 재공지 예정)

- 전액 대체: 복학 신청하는 학기에 등록금 납부 절차 필요 없음('대치 등록'으로 표시)
- 반액 대체: 복학 신청하는 학기에 등록금의 반액 납부 필요('반액 등록'으로 표시)
- 등록금 소멸: 복학 신청하는 학기에 등록금 납부 필요('정규 등록'으로 표시)

다. 등록금 환불은 자퇴 또는 제적 시에만 가능


2. 등록 휴학 유의 사항

가. 휴학 상태에서는 등록금 고지서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등록 휴학 희망자는 등록금 납부 시까지 재학 상태를 유지하고 등록금 완납 후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나.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쳐야 인정학기(학년)가 올라감

주의 사항

가. 신입학기(1학년 1학기)는 가사 휴학 불가 (입대휴학과 질병휴학만 승인 가능)

나. 휴학 상태에서는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장학금을 수령한 이후 휴학 신청할 것 

가사 휴학

2025. 1. 8.(수) ~ 기말고사 시작 전일까지 접수

학교 방문없이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구분	가사 휴학	가사 휴학 연장
휴학 기간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2개 학기(1년) × 2회 연장 신청 가능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EDWARD 시스템
휴학 연한	최대 연장 시, 최대 6개 학기(3년) ※ 단, 가사휴학과 질병휴학을 통산하여 3년까지 사용 가능함	
비고	1학년 1학기(신입생) 신청 불가 1학년 2학기부터 가사휴학 신청 가능	

1. 가사휴학 승인 확인

- [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는 가사휴학 신청 즉시 '승인'으로 표시되나, 실제 학적반영 여부는 [학적기본관리]의 학적상태에서 확인하여야 함

2. 반년(1개 학기) 휴학

- 가사휴학 신청 시 기본 1년 단위로 신청되므로, 반년(1개 학기) 휴학 사용 후 복학 신청 바람

3. 입대 휴학자 중 가사 휴학 연장 희망자

- 입대 휴학자는 제대 복학 승인 이후에 가사 휴학을 추가로 신청 가능함

● 입대 휴학

2025. 1. 8.(수) ~ 기말고사 시작 전일까지 접수

입대 2주 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구분	입대 휴학	부서관 등 군복무로 인한 입대 휴학 연장
휴학 기간	6개 학기(3년)	4개 학기(2년)
증빙 서류	입영통지서, 입영예정통지서 중 택 1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교무·교직원 방문 신청 (행서관 202호)
비고	1학년 1학기(신입생) 신청 가능	최초 신청한 입대휴학의 복학예정학기 이내에 연장 신청해야 함

1. 학기 도중 입대자 휴학 신청

가. 2025학년도 1학기 입대휴학은 **1학기 학사 일정 이내**에 입대하는 학생만 신청 가능

나. **학기 도중 입대자**의 경우, 귀향조치 문제 또는 군휴학 신청 반려 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사휴학을 먼저 신청 바람

- ① 입대 예정 학기에 가사휴학을 먼저 신청(가사 휴학 신청기간은 4p 참조)
- ② 가사휴학 상태에서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입영일 2주 전까지 '군휴학 연장' 신청

2. 입대 휴학 연한

가. 군복무로 인한 입대 휴학 기간은 가사휴학 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나. 같은 학기에 가사휴학 후 군휴학으로 연장 신청한 경우, 해당 학기는 군휴학으로 대체됨

3. 귀향 신고 ★

- 군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입영 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교무교직원으로 방문하여 귀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의 사항

가. 입대휴학 신청 시 복학예정학기는 3년(6개 학기) 후로 표시되며, 전역하였다면 복학예정학기 이내에 복학신청이 가능함

나. 입대휴학 증빙서류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은 승인 불가
그 외 본인의 인적사항과 입영일자가 전부 포함되지 않은 서류는 승인 불가

다. 반드시 군입대 2주 전까지 휴학신청을 등록하고, 승인 결과를 확인한 후 입대할 것

- 휴학이 반려(미승인)된 경우, 승인 상태에 [반려]로 표시되며,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이 필요함
- 입대 당일 휴학을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군휴학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음
- 반려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을 시 등록금 소멸, 미등록제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 그 외 휴학

2025. 1. 8.(수) ~ 기말고사 시작 전일까지 접수

다음의 휴학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각 담당부서로 방문 신청

구분	질병 휴학	출산·육아 휴학	
휴학 기간	2개 학기(1년)	2개 학기(1년)	
증빙 서류	종합병원*의 진단서 (단, '1개월 이상 학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소견서 불가)	출산	출산진단서, 출산예정진단서 중 택1
		육아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교무·교직원 방문 신청 (행소관202호)	교무·교직원 방문 신청 (행소관 202호)	
비고	질병휴학 후 복학 시에도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 ※ 가사휴학과 질병휴학은 통산하여 3년까지 사용 가능함		

구분	국가고시 휴학 (ex. 경찰, 소방공무원 등)	창업 휴학	
휴학 기간	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최대 연장 시	4개 학기(2년)
증빙 서류	연수원 연수증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등	
신청 방법	교무·교직원 방문 신청 (행소관 202호)	창업교육센터로 문의 (053-580-6772)	
비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업종 ※ 상세는 공지사항 확인	

가. 종합병원* 조회: <https://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에서
병원 구분이 '종합병원' 이상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승인 가능

나. 주의사항: 증빙 서류(형식, 내용 등)가 미비한 경우 휴학 승인 불가

● 자퇴 신청

자퇴 신청 절차

- 1 [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자퇴 신청 등록
- 2 자퇴 신청 등록 후 자퇴 신청서 출력(1매)
- 3 소속 학과의 학과장과 면담 실시
- 4 면담 결과 및 학과장 서명을 받은 자퇴신청서를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 휴학중에도 자퇴 신청 가능

1. 자퇴 면담

- 가. 자퇴 시 소속 학과의 학과장과 면담 진행 필요(지도교수 X)
- 나. EDWARD시스템의 [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면담 시에 지참
- 다. 면담 방법(대면, 비대면), 일정 조율 등은 **본인의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학과장 연구실**로 직접 문의 바람

2. 자퇴 승인 처리

- 가. 단과대학에 자퇴신청서 제출 후, 교무교직팀에 서류 도착 시 승인됨
(통상 단과대학 제출 후 승인까지 3~4일 가량 소요)
- 나. 자퇴 승인 시에는 자퇴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승인

주의 사항

- 가. EDWARD시스템에서 자퇴 신청을 등록했다고 하여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등록 후에는 반드시 자퇴신청서를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함
- 나. 자퇴신청서에 면담 결과가 없으면 자퇴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속 학과의 학과장과 면담을 진행하여야 함
- 다. 자퇴 신청 등록 후 일주일 내에 자퇴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퇴 신청 내역이 삭제되며 자퇴신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함

● 등록금 반환

자퇴 신청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2025학년도 1학기 기준)

반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2025학년도 1학기 기준일
등록금 전액 반환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5. 2. 28.(금) 까지
등록금의 5/6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25. 3. 1.(토) ~ 3. 30.(일)
등록금의 2/3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5. 3. 31.(월) ~ 4. 29.(화)
등록금의 1/2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5. 4. 30.(수) ~ 5. 29.(목)
등록금 소멸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5. 5. 30.(금) 이후

※ 휴학중 자퇴신청자의 경우 최초 휴학신청일이 기준일자가 됨

1.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 가.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자퇴 신청일
- 나.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최초 휴학 신청일

2. 등록금 반환 신청 방법

- 가. EDWARD 시스템에서 자퇴 신청 등록 전 팝업창에서 등록금 반환 신청이 가능함
- 나. 자퇴 등록 시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 자퇴 승인 이후 다음 메뉴에서 별도로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함

- 반환 신청 메뉴: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및환불관리 > 등록금반환신청

- 다. 등록금 반환은 자퇴 승인 이후 가능하며, 승인일로부터 통상 1~2주 가량 소요

주의 사항

○ 등록금 환불규정과 휴-복학시의 등록금 대체 규정은 상이함에 유의 바람

ex. 휴학생이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다면 등록금 대체규정이 아닌 별도의 '자퇴 신청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되며, 최초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등록금이 소멸 될 수도 있음